

검 토 보 고 서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가. 청 원 인 : 유가족 대표 류건덕, 부상자 대표 한을환

나. 회부일자 : 2024. 4. 12.

다. 소개의원 : 김꽃임 의원(산업경제위원회)

2. 청원요지

청원인들은 2017.12.21. 제천시 하소동에서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로 2020. 3. 충청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가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줄 것을 청원함.

3. 청원이유

가. 대법원까지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소방공무원 과실 중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사망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원인들은 보상은 커녕 막대한 소송비용만 더 부담하게 됨.

나. 청원인들과 충청북도 간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고 할지라도, 청원인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자라는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임.

다. 이에 청원인들은 충청북도의회가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주실 것을 청원함.

4. 소개의원 청원소개의견 요지

가. 제천스포츠 화재 참사로 청원인들의 다수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청원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

나. 충청북도의회가 제천 화재참사 피해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면제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도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청원을 소개하게 됨.

5. 소송비용 면제에 관한 검토

-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채무면제를 규정

< 지방자치법 >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 ④ <생략>.

-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천화재참사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에게 청구된 소송비용은 1억7천7백만원으로 소송비용이 면제되더라도 2024.2.15. 유족 지원 협약에 따른 추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예상되어 실질적 매듭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법」과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에서는 각각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한다고 규정함.
- 청원처리결과의 보고방식과 이행 강제성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법적 구속력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음.

6. 검토의견

- 「제천스포츠센터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을 검토한 결과, 청원인들에게 청구된 소송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5항에 따라 채무 면제를 충청북도의회에서 결의를 요청하는 내용임.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론적 원칙임.
- 특정 소송 건에 대한 소송비용 면제는 패소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유가족의 사정으로 1.77억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수용 여부도 고려해야 함.
- 본 청원을 통한 소송비용 면제는 향후 유사한 소송비용 면제 요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결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

- 본 청원에 대해 도의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소송비용 면제에 대한 의결이 아니므로 소송비용 면제(채권에 관한 채무면제)는 별개의 건으로 처리해야 함.
- 최근 법제처의 법령회신 사례에 비추어보면, 청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방자치법」상 ‘청원의 수리 및 처리’에 대한 의결로서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이며,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 따라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결로 청원을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의 이행 강제성 등 법적 구속력에 관한 사항은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국회 결의안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당국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의 사회적 파급력
 - 사고 발생 약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충청북도와 유가족 측의 피로도
 - 공공기관의 신뢰도 및 도민화합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

- 또한, 지난 해 12월에 통과된 국회 결의안 내용 중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대책수립과 이행,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적극적 대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충청북도에서 논의 중인 유가족 지원 문제와는 별개로 소송비용 면제(채무면제)에 대한 문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익적 차원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됨.